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와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선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성주참외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추가(제5조제3항)
○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지원 삭제(제5조제4항)
○ 수입금을 추진위원장 명의로 예치 관리하는 내용을 추진위원회로 변경(제13조)
○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업무는 민간에 이양(제16조)

5. 검토의견

☐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☐ **본 개정 조례안은**

○ 성주군 참외축제의 예산이 **「민간행사보조」과목에 편성**되어 있기 때문에 **예산편성 과목취지에 맞게 본 조례 일부를 개정**한 것으로 생각되며,

○ 특히, 수입금을 **추진위원장 명의**로 금융기관에 예치·관리하는 내용을 **추진위원회 명의로 변경**한 것은 각종 수입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

☐ **결론적으로**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**신·구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**

○ 다만, 축제경비를 **「민간행사보조」**에 편성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**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